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6.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3035	박덕흠의원	‘24. 8. 2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4.29.) 상정
	2206853	정희용의원	‘24. 12. 23.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4.29.) 상정

- 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4.2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나.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3).
-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 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3(중전의 제6조의2)의 제목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를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를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등록 기준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기준”을 “허가·등록 기준”으로, “점검 결과”를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로 한다.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 계획서의 사본과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

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 중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각각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의8을 제3호의9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

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
-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및 도태명령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제4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②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의3제3호·제4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u>

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 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제6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
(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
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
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

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
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
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이행
을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방역관리계획서의 사본과 제3
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
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
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
육주기 등에 따라-----

-----.

④ (생 략)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

-----.

<단서 삭제>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생략)

③ (생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③

1. -----제1항 및
제2항-----

2. -----

-----제1항 및 제2항-----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 20조 제 3항--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48조(보상금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항 및 제3항-----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
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
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
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
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
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
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
다.

4. ~ 6.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

-----축산계열화사업자
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
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
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의2. -----
-----.

-----축산계열화사업자
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
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
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
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
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
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
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 5. (생략)

④ ~ ⑦ (생략)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
의회 구성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

1. -----제6조의
3-----

2. -----

-----제20조제1항·
제2항-----

--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
의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③ · ④ (생 략)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 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u>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 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 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 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 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의 정 도를 고려하여야 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 -----제20 조제1항·제2항-----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 ----- ----- -----
---	---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 4. (생략)

② ~ ⑥ (생략)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제60조(과태료) <신설>

-----.

1. 제20조제1항 · 제2항-----

2. 제20조제3항-----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

-----.

1. 제20조제1항 · 제2항-----

2. ~ 4.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4.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5.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6. (생략) 3의7.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u>축산계열화사업자</u> <신설> 3의8. (생략) 4. ~ 6. (생략) ②·③ (생략)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u> ② ----- ----- -----. 1. ~ 3의6. (현행과 같음)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u>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u> 및 <u>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u>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u>계약사육농가</u> 및 <u>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u> 3의9. (현행 제3호의8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